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검 토 보 고 서

2026. 11. 16.(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석 의원 외 11명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남해석의원 외 11명

○ 제안일 : 2026. 11. 6.

○ 회부일 : 2026. 11. 9. (의안번호 : 26 - 143)

2. 제안이유

○ 실버합창단원의 신규 위촉 연령 상한을 높이고 활동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고령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단원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연·연습 및 이에 수반되는 이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구립예술합창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단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실버합창단원의 신규 위촉 연령 상한을 75세에서 77세로 높여 위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8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면 당연 해촉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함(안 제9조제4호).

○ 구청장이 구립예술합창단의 공연·연습 및 이에 수반되는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입법예고 : 2026. 11. 9.(월) ~ 2026. 11. 13.(금)

5. 검토보고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남해석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실버합창단원의 신규 위촉 연령 상한을 높이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고령 구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단원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연·연습 및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합창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단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7조제1항제3호)실버합창단원의 자격 및 신규 위촉 연령 기준 정비

- 실버합창단원의 자격을 61세 이상의 구민으로 규정
- 신규 위촉 대상자는 위촉일 현재 77세 이하로 제한

○ (안 제7조제3항)합창단원 당연 해촉 기준 정비

- 일반합창단원: 상한연령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 경과 시 - 소년소녀합창단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 실버합창단원: 80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 경과 시

○ (안 제9조제4호)단원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사유 신설

○ (안 제13조제2항)공연·연습 및 이에 수반되는 이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근거 신설

3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버합창단원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단원 자격 및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령 구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공연·연습 및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원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보상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조문별 검토 및 유의사항

1. 실버합창단원 자격 및 신규 위촉 연령 정비(안 제7조제1항제3호)

○ 실버합창단원의 자격을 61세 이상의 구민으로 하고, 신규 위촉 연령을 77세 이하로 규정하여 신규 단원의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다만, 신규 위촉 연령 제한은 고령자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와 관련되는 만큼 연령 기준의 합리성과 객관적인 설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타 지자체 연령 현황>

모집 상한	자치구	비율
상한 없음	강북구, 금천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5개 /35.7%
만 70세 이하	광진구, 성동구, 영등포구	3개 / 21.4%
만 71세 이하	송파구	1개 / 7.1%
만 75세 이하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중구	5개 / 35.7%
(가) 합계		14개 / 100.0%

○ 조사 대상 14개 자치구 중 9개 구(64.3%)가 신규 위촉 연령 상한을 두고 있으며, 5개 구(35.7%)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음.

2. 합창단원 당연 해촉 기준 정비(안 제7조제3항)

○ 합창단 유형별 당연 해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실버합창단원은 80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이 경과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단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활동 상한연령을 80세로 설정한 근거와 기존 단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연령을 초과한 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단원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사유 신설(안 제9조제4호)

○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단원 자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제7조제3항의 당연 해촉 규정과 제9조제4호의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규정이 중복 적용되거나 해석상 혼선이 발

생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합창단원 보험가입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 공연·연습 및 이에 수반되는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보험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소요예산 및 기존 보험과의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버합창단원의 신규 위촉 연령과 활동 기간을 확대하고, 단원 자격 및 해촉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합창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고령 구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단원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신규 위촉 연령을 77세 이하로 제한하고 80세가 되는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당연 해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령 기준의 합리성과 기존 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당연 해촉과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규정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및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표 1]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